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12

발의연월일: 2024. 11. 6.

발 의 자:임오경·서영교·김재원

한민수 · 민병덕 · 차지호

문정복 · 김남희 · 위성곤

강선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채권 만기보유 특약 체결 시 만기에 따라 30% 또는 40%) 및 대토보상 4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고 있음.

또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의 경우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거주자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40%,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취득한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1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2억원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사업 시행 등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특별한 희생이고, 수용대상자들이 지급 받는 보 상금이 종전의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부족하여 사회적 갈등이 자주 발 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와 유사한 규제를 받고 있는 특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개발제 한구역 토지와 동일한 감면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특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토지와 동일한 감면을 적용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2 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4억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77 조의3제2항 및 제133조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토지등"을 "토지등(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를 "해당 토지등(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던 토지가 특별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취득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를 "해당 토지등(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던 토지가 특별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소재지"로 한다.

제133조제1항제1호 중 "1억원"을 "2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2억원"을 "4억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된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생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현행과 략) 같음)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2)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 토지등(2024년 12월 31일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이전에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 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 된 토지를 포함한다)-----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 을 통하여 2025년 12월 31일까 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 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 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

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1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	해당 토지등(개발제한구역으
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로 지정되었던 토지가 특별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	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를 포
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한다)을 취득하여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	
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	
당하는 세액	
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	2
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	
업인정고시일까지 <u>해당 토지</u>	<u>해당 토지</u>
<u>등의 소재지</u> 에서 거주하는 대	등(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
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었던 토지가 특별관리지역으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의 소재지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	1333	돈(양	도스	산득	세	및	7	-0	세
	감면	의	종현	합한	도)	1) 7	인	0]
	제33	조,	제4	3조,	, 제	663	&부 E	터	제
	69조	까지	, ;	세69	조의	12부	닉터	제	69
	조의	4까 ⁻	지,	제7()조,	제'	77조	, z	17
	7조의	박2,	제7	7조	의3,	제	85조	의	10
	또는	법	률 :	제65	5383	<u> </u>	후칙	제	29
	조에	따	라	감당	년받	을	양도	소	득
	세액	의	합겨] 액	중이	베서	다	슬	각
	호의	금	액	중	큰	급이	백은	감	면
	하지	아	니힌	다.	\circ	경우	우 김	면	받
	는	양도	-소	득세	액으	븨	합계] 액	은
	자산	양도	의	순/	서에	u	나라	합	산
	한다								
	1 7	າງ ດດ -	7	الرح	りマ	الح	cc z	日	r:1

-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1
<u>2억원</u>
2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 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 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 로 계산한다.

가. (생략)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 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 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 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 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②・③ (생략)

<u>.</u>
가. (현행과 같음)
나
4억원
②·③ (현행과 같음)